

이것은 1990년 이전까지는 독일소행으로 돌리
던 4천여명의 폴란드인 불
정설이라는 견해를 밝

집단살생을 사건인「카잔호 대 학살」과 관련, 범행인체를 시인하고 솔직한 사죄를 했다. 그러나 유독 일본만 이 침략을 지키면서 과거 죄를 법정의 대 한 채 임한 65년 협정의 의해서

일본이 국가적 차원에서
인한 국가배상을 규정하고

이공민배우입니다

금법이란 특별법을 제정
臺灣출신 일본군유족 3
마침내게 1인당 5백만
엔씨의 위도금을 지급했음을
이와관련, 태평양전쟁 희
무대책반을 구성, 일본

정부는 정신대문제가韓
日협약으로 떠오르고 구
체적인 배상책임이 거론되
자 뒤늦게 「정신대문제실

日 「끝없는 발뻘」 양국관계 걸림돌로

생자유존회등 관련 단체와 국내법학자및 법조인들은 구키로했다고 밝혔다. 그 일본의 국가적 범죄에 대 러나 이같은 정부의 태도

한 배상책은 어떤 이유
로도 면할 수 없다고 주
장한다.

서울대 白忠鉉교수(국제
법)는 "일본은 65년 협정
으로 국가간 철구권분쟁
가 과거처럼 여론에 밀려
마지못해 대책 마련에 나
서 미온적인 자세에서 벗
어나 국가차원의 노력으로
임해야 한다"는 것이 관계자
들의 주장이다.

일단 된 것으로 주창하자
만 당시에는 청신대문제가
거론조차 되지 않아 국가차
원의 청구권이 마부리였다
고 볼 수 없다"고 밝혔다.
白교수는 또 "독일의 경
우가 그러했듯 '인도에 대
한 일대지배'라는 공상사조의
한인대지배(韓人對支支配)
는 일본총독의 공상사조의
그에 따를 법적 경제적 배
상조치가 수반돼야 함은 말
할 것도 없지만 우리 국민들
도 과거의 불행했던 역사
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

한 법질(=Crime against humanity)은 시효가 없
는 당사의 일체민행(一
체민行)을 결
단(決定)한
다. 이것이 국제법상의 통례
말했다. **〈潘炳熙〉**

一
 卷之五
 卷之五